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47회 임시 이사회 회의록

2024. 2. 28.(수) 10: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47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10:00 ~ 12:00
- 장 소: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함께' ※ 온라인 회의 병행
- 재적이사: 총 9명
- 출석이사: 총 6명
- 출석감사: 총 2명

사무국장이 제47회 이사회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서울 장학재단 정관』 제32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사회 소집권자 궐위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32조제3항에 의거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개최를 선언하고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사회 출석이사 중 연장자인 000 이사께 개회 선언과 의장 선출을 진행해 주기를 요청하다.

000 이사가 제47회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사무국장이 제47회 임시이사회 성원을 보고하다.

000 이사가 제47회 임시이사회 의장 선출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000 이사를 의장으로 추천하다.

000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000 이사가 전원 찬성으로 000 이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000 의장이 인사말에 이어 심의안건 개요를 설명하고,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은 미리 배포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 보고사항을 설명하다.

보고사항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2024년 연간 이사회 운영 보고
3. 2024년 재단 안전보건 계획 보고
4. 재단 운영 현황
5. 장학사업 운영 현황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000 의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268호 기부금 사용 승인의 건

000 의장이 제268호 기부금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제268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제2호를 설명하고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본 안건에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2023년 기입금된 기부금은 총 7,000만원으로 기부금 사용 승인 상세 내역은 △△△에서 기부한 200만원을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으로, ☆☆☆에서 기부한 6,800만원을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2024년 서울시에서 서울장학재단 사무국 운영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9,430,914천원을 분기별로 출연할 계획이며, 2024년 기부 예정된 금액은 총 130,000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에서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지원을 위한 <오토꿈이룸서울 장학금>으로 30,000천원, ☆☆☆(임직원 기부금)에서 저소득가정 대학생 지원을 위한 <청춘start장학금>으로 100,000천원이 기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입금 예정된 위탁사업비 금액은 총 230,000천원으로, <이공계 외국인유학생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000 의장이 제268호 기부금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호 기부금 사용 승인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69호 2023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270호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271호 2023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

000 의장이 2023년 회계 및 예산 결산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269호 2023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270호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271호 2023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을 통합하여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제269호 2023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자료의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에 대해 설명하다.

2023년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5,604,014,813원, 부채총계 338,649,844원, 순자산 총계 15,265,364,969원이며, 운영성과는 사업수익 9,961,699,450원, 사업비용 10,095,606,438원, 사업손실 -133,906,988원, 사업 외 수익 609,087,287원, 당기운영이익 475,177,465원이라고 설명하다.

이어서 제270호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세입총계는 11,142,881,892원이며, 세출총계는 10,335,549,071원으로 세계잉여금이 807,332,821원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

제271호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807,332,821원이며, ◇◇사업비 사고이월 216,795,320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90,537,501원에 대하여 2024년 장학사업(7개) 및 성장지원사업, 장학생 선정위원회·자문위원회, 정보화사업, 사무국운영 등 전액 목적사업에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OOO 의장이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OOO 이사가 장학사업비는 이중수혜, 학적변동 등에 따라 장학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집행률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장학금 반납 추이 및 이중수혜 확인 여부에 대해 묻다.

사무국장이 장학사업비는 장학생 선발 미달 및 장학금 반납에 따라 집행률이 달라지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장학금 반납은 감소하였으나 ◇◇사업비 사고이월, □□□장학생 선발 미달 등으로 인해 96%를 집행하였다고 설명하다.

또한 등록금성 장학금의 경우 학사정보 심사 시 학교정보를 받아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급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장학금 지급등록을 통해 이중으로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희망대학 장학사업 일몰로 중복수혜 반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다.

OOO 의장이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추가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9호 2023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270호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271호 2023년 세계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72호 2024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

OOO 의장이 제272호 2024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정관 제6조에 의거 2023년 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2024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을 부의하였음을 설명하다.

사무국장이 회의자료를 통해 2023년 제15회 정기이사회(2023.11.28.)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 대비 2024년 실행예산(안)을 설명하며 기부금, 운용소득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다. 2024년 세입 실행예산(안) 총액은 10,906,363천원으로, 서울시 출연금 9,430,914천원, 기부금 수입 130,000천원, 운용소득 524,912천원, 위탁사업비 230,000천원, 전기이월금 등 590,537천원이며, 세출 실행예산(안)은 총 10,906,363천원으로, 장학사업비 9,216,216천원, 사무국운영비 1,165,235천원, 예비비 및 기타 524,912천원이라고 설명하다.

지난 제15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중 장학사업 확대 및 양질의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청춘Start장학금>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이공계외국인유학생장학금>이 신설되었다고 말하다.

이어 <장학생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홍보사업비>는 예산을 감액하여 운영하고, 예비비는 당기이자소득 예상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재단은 2024년 총 13개 장학사업을 통해 3,2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8,72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생 멘토링, 서포터즈, 아카데미, 선순환 프로그램 운영 등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장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실무체험형 직무교육(직무부트캠프) 등을 중점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OOO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OOO 이사가 <서울이공계외국인유학생장학금>에 대해 장학생 선발 및 관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물으며, 대학원 연계 등 장학생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하다.

사무국장이 본 사업은 서울시 정책 연계사업으로 서울시와 국내 4개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하며, 협약된 개도국 장학기관과 연계하여 장학생을 모집, 선발하며, 장학생은 국내 대학원 합격 후에 최종 선발되므로 장학생이 소속된 국내 대학들과 연계하여 장학생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선발심사 과정은 각 대학원에 맡기면, 심사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장학생 국가도 여러 나라의 장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선발,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이 높고,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장학생의 문제 발생시 책임을 재단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선발 과정에서 서울시와 재단은 최소한의 관여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OOO 의장이 본 장학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고 서울시 ◇◇에서 총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OOO 의장이 2024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호 2024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73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

OOO 의장이 제273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제273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에 따라 제17조(휴일) 제1항의 창립기념일 유급 휴일을 삭제하며, 경영평가 조치 개선 사항으로 제22조의 3(연가의 이월저축) 제2항의 저축한 연차일수 소진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자 규정을 개정한다고 말하다. 다만,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조치에 따라 제26조(특별휴가)의 가족돌봄휴가제도 정비 및 사용요건 명확화 관련 사항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개선의 일원화 필요성에 따라 개정 보류 요청으로 향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연가의 저축이 가능한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는지 묻다.

사무국장이 연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1년간 개인별 연가소진 후 남은 일수는 모두 이월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재단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삭제 사항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규정 개정 전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고 추후에는 관련 내용(동의 등)을 이사회 안건자료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다.

사무국장이 재단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삭제 건과 관련하여 직원들 대상 복무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받았다고 설명하다.

OOO 의장이 제273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제시된 의견에 따라 '재단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삭제', '저축한 연가일수 소진기간 확대' 건은 개정하고, 제26조 '가족돌봄 휴가제도 정비 및 사용요건 명확화'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복무제도 일원화 정비 계획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하지 않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74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

OOO 의장이 제274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제274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경영평가 조치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승진가산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3조(용어의 정의) 9호 '승진가산급' 신설 및 제10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제1항 2호에 승진가산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서울시와의 합의에 따라 제 17조의2(복리후생비 등) 제3항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부칙의 내용 중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가 되었는지 묻다.

사무국장이 서울시 주무부서 및 공기업담당관과 부칙규정을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다.

OOO 의장이 제274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75호 장학사업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OOO 의장이 제275호 장학사업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제275호 장학사업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종합감사 권고사항에 따라 장학사업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으로는 제2조(장학사업의 종류) 제3항에 기능분류에 따른 장학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이중수혜 제한)의 용어 현행화, 제12조(장학금 지급중단)의 제목을 결격사유로 변경하며, 결격사유 내용 개정 및 신설, 제13조(장학금 반납)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규정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OOO 의장이 안건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구하다.

OOO 이사가 제12조 1항 장학생 결격사유 중 3호에 명시된 장학생 의무에 4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으로서의 품위유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묻다.

사무국장이 제3호의 장학생 의무사항은 장학생 프로그램 활동참여, 성장보고서 제출 등 각 장학사업별 장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의미하며, 제4호는 장학생의 품행 등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경우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제13조 장학금 반납 규정 중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된 장학금만 반납할 수 없는 건지 묻다.

사무국장이 재단에서는 정액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액 반환 금액을 통해 예비후보자에게도 정액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재정과 공공재정에서 받는 장학금의 법의 기준이 달라지는지 묻다.

사무국장이 사립재정과 별개로 공공재정의 경우 위의 법률에 따라 부정청구, 부정이익이 발견될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하며,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OOO 의장이 제275호 장학사업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호 장학사업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OOO 의장은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2월 28일